#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<b>기 관 명</b>	<b>환경부</b>
(부서명)	(대기관리과)
연 월 일	2024

법제처 심사 전

#### 1. 개정이유

「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」제21조제1항 개정(공포2024. 1.9. 시행일 6개월 후)되어, 동 법조항에서 위임한 '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'을 정하는 하위법령을 제때 마련하려는 것임.

### 2. 주요내용

가. 민간배출시설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로 범위를 설정(제12조 제1항 신설)

나. 환경부장관의 요청 시기를 현행 7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변경하여, 사업장의 준비기간을 충분히 부여(제12조 제3항 개정)

#### 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: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#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 본문 중 "제1항"을 "제2항"으로, "7일"을 "30일"로 한다.

①법 제21조제1항 각 호외의 부분에서 "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민간배출 시설"이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에서 운영하는 배출시설을 말한다.

#### 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2조(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	제12조(가동률 조정 등의 요청 방
법·절차 등) <u>&lt;신 설&gt;</u>	법·절차 등) <u>①법 제21조제1항</u>
	<u>각</u> 호외의 부분에서 "환경부령
	으로 정하는 민간배출시설"이
	란 대기환경보전법 제25조에 따
	른 제1종 및 제2종 사업장에서
	<u> 운영하는 배출시설을 말한다.</u>
① (생 략)	$\underline{\mathbb{Q}}$ (현행 제 $1$ 항과 같음)
@ 환경부장관은 <u>제1항</u> 에 따른	<u>③</u> <u>제2항</u>
요청을 하려는 경우에는 요청사	
항,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별 특	
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한 조치기	
간 및 사유를 조치 시작일 <u>7일</u>	<u>30일</u>
전까지 통지해야 한다. 다만, 대	<u>-</u>
규모 화재 등으로 인한 심각한	
대기오염에 따라 미세먼지등의	
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	
경우에는 통지를 생략할 수 있	
다.	
<u>③</u> · <u>④</u> (생 략)	<u>④</u> ・ <u>⑤</u> (현행 제3항 및 제4항과
	같음)